

해양수산부 환경부	보도자료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배포일시	2021. 6. 25.(금) 총 9매(본문 3, 참고 5)	
담당부서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담당자	• 과장 구도형, 서기관 이인자, 사무관 김지현, 주무관 김민지 • ☎ (044)200-5240, 6181, 6182, 6184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담당자	• 과장 유호, 사무관 서혜인 • ☎ (044)200-7220, 7238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가능		

남극 인익스프레시블섬, 펭귄마을에 이어 보호구역 지정

- 제43차 남극조약 당사국회의(6월 14~24일)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인익스프레시블섬' 을 남극특별보호구역으로 승인 -
- 우리나라의 남극보호 지평 확대 및 남극활동 여건 신장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6월 14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온라인 비대면회의로 열린 제43차 남극조약 협의 당사국회의(이하 남극회의)에서 한국, 중국, 이탈리아가 공동으로 제안한 '인익스프레시블섬*'이 남극특별보호구역으로 승인되었다고 밝혔다.

* 보호구역 공식 명칭: Inexpressible Island and Seaview Bay, Ross Sea

※ 남극조약 협의당사국회의(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Meeting): 남극 지역의 평화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남극조약 가입국 (54개국)이 참여하는 연례회의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남극에 보호구역을 지정한 것은 2009년 세종기지 인근의 '나레브스키 포인트(일명 펭귄마을)'에 이어 '인익스프레시블섬'이 두 번째다.

'인익스프레시블섬'은 펭귄마을에 비해 면적이 3.4배(0.98km^2 : 3.31km^2) 넓고, 번식하는 펭귄의 둥지수*도 6.4배(4,800 : 30,000)가 많다. 환경변화

관찰 지표종인 아델리펭귄과 표범·웨델물범의 서식지이지만, 최근 관광·연구 등이 늘어나면서 한국·중국·이탈리아가 공동으로 2019년 남극회의에서 보호구역 지정을 처음 제안했다.

* 등지수가 30,000개라는 것은 부모와 새끼(보통 등지당 2개의 알을 낳음)를 포함하면 약 12만 마리의 펭귄이 분포한다는 의미

남극특별보호구역은 남극의 환경적, 자연적, 과학적 또는 미학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조약의 협의당사국들이 남극의 특정 지역에 대해 보호구역 지정을 제안하면 협의당사국회의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1961년부터 현재까지 한국, 미국, 프랑스, 일본 등 16개국은 총 72곳의 남극특별보호구역을 지정했으며, 보호구역 지정을 제안했던 국가가 중심이 되어 생태계 조사, 환경관리 및 출입자 통제 등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가 지정한 ‘펭귄마을’은 현재 환경부와 극지연구소가 협력하여 매년 생태계 관측(모니터링)과 폐기물 수거 등의 보호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주요 결과는 협의당사국회의 및 학술지 등을 통해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있다.

한편, ‘인익스프레시블섬’이 위치한 남극 로스해는 전 세계 아델리펭귄의 38%, 황제펭귄의 26%가 서식하는 세계 최대의 해양보호구역으로, 해양수산부는 지구온난화와 무분별한 수산자원 남획으로부터 남극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로스해의 해양 생태계와 아델리펭귄 번식 관측(모니터링) 등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남극해 해양보호구역의 생태계 구조 및 기능 연구: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생태계 및 환경변화 파악, 아델리펭귄 개체군 생태 연구 등 / '17~'21 / 극지연구소 수행

구도형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은 “그동안 우리나라는 남극 과학 기지와 아라온호를 발판으로 남극 환경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라며,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인익스프레시블 섬’에 대한 생태계 모니터링 등 책임 있는 남극활동 국가로서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유호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올해 5월 말 열린 ‘2021 피포지(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와 함께 이번 ‘인익스프레시블섬’의 보호구역 지정은 국제 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적 기여에 의미가 있으며, 향후 공동체안 3국과 협력하여 ‘인익스프레시블섬’의 보호와 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피포지(P4G,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는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를 의미하며, 전 세계 공공·민간 기관의 협력 확대를 통해 녹색성장과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가속화를 위한 다자협력 소통창구(네트워크)

- 붙임 1. 남극조약 개요 및 우리나라 지정 남극특별보호구역 개요
2. 질의/응답. 끝.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붙임1

남극조약 및 우리나라 지정 남극특별보호구역 개요

남극조약 개요

- (조약 명칭) 남극조약(the Antarctic Treaty)
- (목적) 남극지역을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하고 기타 과학적 조사사업에 대한 국제협력의 조화 도모, 영유권 주장 동결
- 연혁 및 가입국 현황
 - 채택/발효 : '59.12.1/'61.6.23
 - 우리나라 가입/비준 : '86.11.28('86.11.28 발효)
 - '21.6월 현재 가입국 : 54개국

- ▷ 협의당사국(ATCP)* : 29개국(우리나라는 '89.10월 협의당사국 지위 취득)
- ▷ 비협의당사국(non-ATCP) : 25개국(북한 '87.1.21 가입)

□ 협의당사국회의 주요 논의

- 인간의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강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시행
- 남극조약지역에서 생산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과 발생원의 감소 뿐 아니라 저장, 처리 및 제거에 관한 활동의 계획·수행
- 남극특별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과 개선

□ 국내 관련 법령

- 「남극 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04) 및 동법 시행령('05)
 - ※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 비준('96.10.4)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해 외교부 주관으로 3개 부처(외교부, 환경부, 해수부) 공동 입법
 - (주요 조항) 제14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보호)를 통해 남극특별보호구역의 지정 고시, 출입·활동 허가·승인 등을 법적으로 관리

우리나라 지정 남극특별보호구역 개요



1. 나레브스키 포인트(Narebski Point)

- (지정일) 2009년 7월 16일
- (위치 및 면적) 남쉐틀랜드군도 킹조지섬 바톤반도, 0.98km²
※ 남위 62°13'40" - 62° 14' 23", 서경 58°45'25"- 58°47'00"
- (특징) 젠투펭귄(2,460동지)과 턱끈펭귄(2,416동지)을 포함한 9종의 조류가 번식하고 있으며, 펭귄 군서지 주변에 다양한 식생 분포



젠투펭귄



턱끈펭귄

2. 인익스프레시블섬(Inexpressible Is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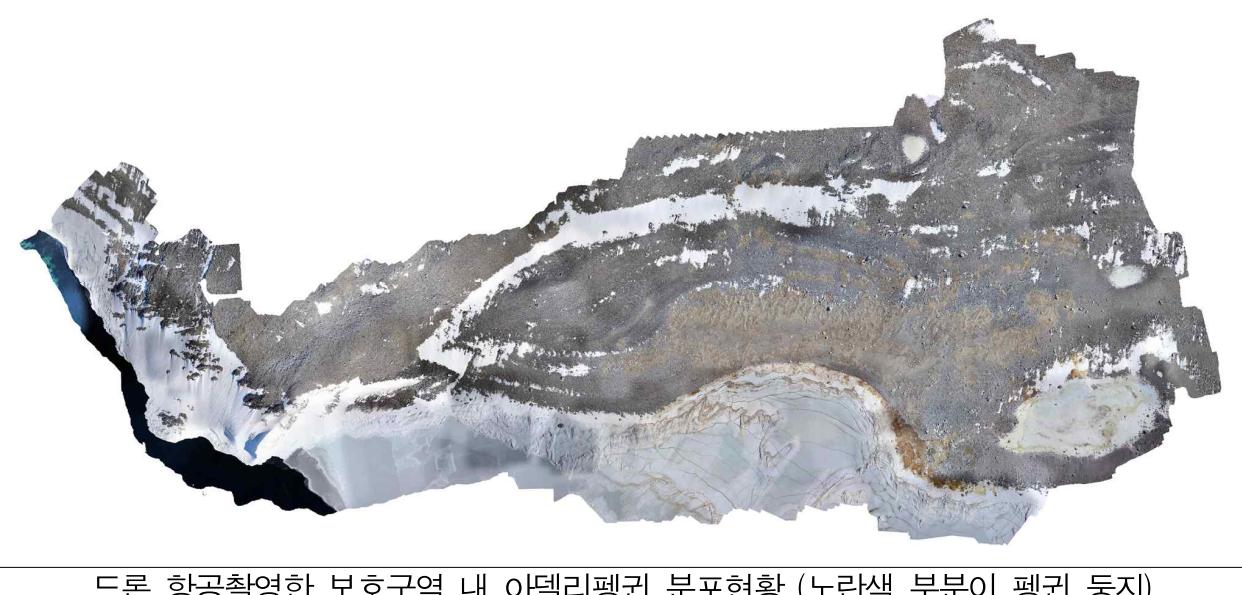
- (지정일) 2021년 6월 24일
- (위치 및 면적) 동남극 테라노바만, 3.31km^2
※ 남위 $74^\circ 54.2'$, 동경 $143^\circ 43.5'$
- 특징
 - (지리) 만년빙 말단에 위치하여 대륙풍(katabatic wind)이 세차게 부는 지역으로, 바다가 결빙되지 않는 폴리냐(polynya)가 형성되는 특이 지형. 펭귄과 해표 등 해양동물의 먹이활동에 유리한 자연환경
 - (생태) 7천년 이상 아델리펭귄(29,899동지)의 서식지이며, 남극도둑 갈매기 등 다양한 생물 분포.
- (기타) 장보고기지 준공(2014.2) 이래, 36km 남쪽에 위치한 인익스프레시블섬의 아델리펭귄 군서지를 매년 모니터링 중



아델리펭귄과 알비노(백색증) 새끼



펭귄군서지의 기상관측탑



불임2

질의/응답

1. '협의당사국', '협의당사국회의'가 무엇인가요?

□ 남극조약에만 있는 특별한 개념입니다.

(1) 남극조약 협의당사국(ATCP)(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Party)

- 현재 남극조약의 당사국들은 활동실적에 따라 협의당사국*(한국, 미국 등 29개국)과 비협의당사국(25개국)으로 나뉘며, 협의당사국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인정할 경우 자격을 취득합니다.

* 과학기지 설치 또는 과학원정대 파견 등과 같은 상당한 연구 활동 실적이 있어야 협의당사국 인정

(2) 남극조약 협의당사국회의(ATCM)(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Meeting)

- 남극조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당사국총회'라는 용어 대신 '협의당사국회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동 회의에는 협의당사국, 비협의당사국 및 옵저버 등이 참여하며 의결권 행사 등의 권한은 협의당사국에게만 주어집니다.

2. 남극특별보호구역은 어떠한 제도인가요?

□ 특정 지역을 남극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 특별히 보호할 만한 가치의 존재

- 환경적.과학적.역사적.자연적 가치 중 어느 하나의 가치가 있거나 과학탐사를 보호하기 위한 실익이 존재해야 합니다.

(2) 실질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한 관리계획서의 적절성

- 경계선, 가능한 관리수단, 기간 등 7개 항목에 걸쳐 해당 구역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된 관리조치를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펭귄마을’과 ‘인익스프레시블섬’은 우리나라 땅인가요?

- 아닙니다. 남극은 그 누구의 땅도 아닙니다.
- 남극특별보호구역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지정되는 것이므로 영토 개념과는 무관합니다.
- 다만, 남극에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특별보호구역이 존재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보호구역을 지정하려고 노력합니다.